



## 발열시멘트체 정보에 대한 영업비밀 해당성 여부 및 비밀유지의무 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

42

### 01 서지 사항

|                  |                               |       |                     |
|------------------|-------------------------------|-------|---------------------|
| 국가   법원          | 일본 오사카지방법원                    | 사건 번호 | 평성19년(와)<br>제11138호 |
| 판결 일자            | 2008. 11. 4.                  | 판결 결과 | 원고 패소               |
| 원고               | 주식회사 오오기공예                    |       |                     |
| 피고               | 다카하시지붕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티알티       |       |                     |
| 참조 법령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6항               |       |                     |
| 영업 비밀            | 발열시멘트체에 관한 정보                 |       |                     |
| 키워드<br>(Keyword) |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비밀유지의무, 채무불이행책임 |       |                     |

### 02 사건 개요

원고는 사진, 도안, 그림 등을 특수 수지 가공하여 노면 및 벽면에 전사하는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다카하시지붕공업 주식회사는 지붕공사의 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피고 주식회사 티알티는 각종 시멘트기와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원고 회사의 발열시멘트체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 받아 이를 사용하여 해설기 및 해설보도판 등을 제조 판매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행위에 대해 생산 및 양도 금지를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 03 주요 쟁점

원 고



피 고

발열시멘트체 정보는 기술상 유용한 정보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해당 정보는 고유의 유용한 정보가 아니다.

해당 정보는 2003년 당시 공지된 정보가 아니며,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다.

탄소를 혼합한 콘크리트에 전기를 통하면 발열한다는 사실은 1966년 공표된 사실이다.

P2는 원고의 직원으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에도 해당 정보를 누설하였다.

### 04 판결 요지

공보에 의해 공지된 정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공보에 기재된 발명과 본건 정보가 일치하기 때문에 2003년 10월 당시 공지된 것으로 본다. 공보의 내용에는 물질이 특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비공지성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물질의 조합에 관한 정보가 공보에 의해 공개된 발명의 경지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비공지성을 긍정 할 수 없다.

원고는 본 건 정보3의 내용으로 단순히 ‘중량 비율’이라고만 주장할 뿐 어떤 정보인지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용성 있는 정보 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한 본 건 정보4의 내용으로 단순히 ‘절연체로 덮는 것’이라고만 주장 할 뿐 어떤 방법으로 절연 하는지에 대해서는 측정하지 않아 이는 단순히 절연을 시행할 때의 작용효과를 말함에 지나지 않고 구체적인 유용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05 Key Point

본 사안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며, 유용성, 비공지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 한 사건이다.

공보에 의해 공개된 발명과 동일한 정보는 비밀정보로 보호 받을 수 없으며, 유용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